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

기술교육처장 정연해



목 차

1. 외국의 전반적 동향

2. 각국의 PL법 동향

2-1. 미국의 PL법

2-2. 유럽의 PL법

2-2-1. 영국의 PL법

2-2-2. 독일의 PL법

2-2-3. 프랑스의 PL법

2-2-4. 이탈리아 PL법

2-2-5. 네덜란드의 PL법

2-2-6. 러시아의 PL법

2.3 일본의 PL법

2.4 중국의 PL법

1. 외국의 전반적 동향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합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 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소송을 선호하는 국민성과 변호사 성공 보수제도가 발달된 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상제도 등 미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며 역시 제조물 책임관련 소송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에게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졌다. 이곳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가맹국간 상이한 법률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제조물 통일입법을 연구, 검토하여 1985년 결합제품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통일 지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가맹국들이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일한 제조물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일본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경제적 원리보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국민생활 심의회의 도입 건의를 발단으로 20여년 간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여 1995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간 입법 형식도 매우 다양한데, 영국과 그리스는 소비자보호법에 제조물책임법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민법을 개정해 이 같은 조항을 넣기도 했다. 럭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별도 입법해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 이탈리아는 제조물책임 대통령령을, 또 포르투갈은 제조물책임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법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육류 곡식 등 1차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1차 농산물까지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제조물 생산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이 같은 형변을 인정하여 기업측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미국과 럽셈부르크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생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는 최고 책임한도액을 5,040만 달러로, 독일은 8,768만 달러로 규제하고 있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만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손해배상한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그 내용이나 형식 등은 각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나므로 주요 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각국의 PL법 동향

2.1 미국의 PL법

'제조물책임'이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PL법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은 법관이 법을 형성하는 이른바 불문법(판례법) 국가로서 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PL법은 본래 영미법의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판례법(Common Law)으로 발전해 온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로, 결국 제조·판매된 제품이 소비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입한 피해에 대한 제조업자 및 판매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일지라도 컴퓨터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하고 이상한 일은 아니다.

종전에는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는 단순한 것이 많았고 구매자는 물건을 사는 현장에서 충분히 제품을 검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하자가 원인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사고처리는 당연히 구매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영미법에서는 '구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는 원칙이 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구매자는 판매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발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며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원칙은 바꾸어 말하면 ‘가해자측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20세기 중반까지의 근대공업 발전 단계에서는 기업의 환영을 받았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매우 엄격하다는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PL은 과실책임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제품의 종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역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제품 자체도 복잡·고도화되었다. 게다가 제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 사용 자체가 어렵고 매뉴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하이테크 제품들이 많아졌다. 특히 조작방법을 조금만이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 주변에 깊숙히 스며들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현대 사회에서는 제품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진 판매자 측이 제품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어 ‘판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라는 원칙으로 법률이 전환되어 이르렀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자 측에 가장 엄격하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일찍부터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판례는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가 내린 그린맨사건(Greenman vs. Yuba Power Products, Inc)일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하면 되게 되어

피해자 구제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PL법 제정의 태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온 당시의 상황은 미국의 소비자보호 사상이 고양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1962년 3월에 발표된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에서는 소비자의 4가지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 첫번째가 ‘안전에 대한 권리’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다음의 몇 가지에 두고 있으므로 살펴보자.

● 손해를 분산할 수 있다.

고도로 복잡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그 제품의 편리성을 누리는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조업자는 그 위험성을 제품 원가에 포함(이를 보험으로 전가시킬 때는 보험료 상당분을 포함)시켜 사용자 전체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과실책임에 기초를 둔 법률체계의 경우, 피해자측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했으나, 이것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과실의 입증이 아닌 결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우선한다는 논리이다.

● 사고억제가 가능하다.

제조업자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더욱 안전한 제품’이라는 명제는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Sales Point 중 하나이므로 제조업자로 하여금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좋은 제품의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 소비자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의 제품들은 대량으로 생산되어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서 결국 제조업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조물책임 법리는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연혁적으로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 책임)의 법리로 전개·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의 PL법은 영국의 판례법이 발전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법률로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각 주마다 영국의 관습을 계승하였으므로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과실책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미국의 PL법은 과실책임에 입각하고 있다. 원래 미국의 과실책임은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1916년 뉴욕주 맥퍼슨 사건에서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제품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편 과실책임에서는 항상 과실의 입증이 문제로 되지만, 미국에서는 일정 조건하에서는 ‘사실추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1944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애스콜라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다. 탄산 청량음료수의 병 폭발로 레스토랑의 여종업원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콜라가 배달된 이후 36시간 동안 그 여종업원이 병을 주의깊게 취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재판소는 원고가 사건 발생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다.

●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책임

명시된 보증이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광고

나 팜플렛에서 명시하여 약속한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드사는 자동차의 바람막이가 바람에 의해서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홍보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한 소비자가 운전하던 중 차운 돌이 튀어들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1932년 워싱턴주의 최고 재판소는 제조업자는 선전에서 명시한 것만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벅스터 사건). 따라서 과실책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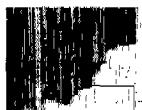
묵시적 보증이란 제품이 판매된 경우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일정한 품질이나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제품으로서 존재한다는 자체는 이미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일정한 품질이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갑자기 정지하거나 미끄러져 버린 자동차나 평균 체중의 사람이 앓는 것만으로도 의자가 부서져 버린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 엄격책임

엄격책임이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증책임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 제품의 제조업자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역시 최초의 사례는 위에서 논의한 그런 맨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는 부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전동공구 Kit를 조작하던 중 나뭇조각이 튀어 올라 앞머리를 다쳤다는 원고의 소송에 대해 원고가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한다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 제품의 제조과정은 고도로 발달된 기



술로 복잡한 공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기술이나 공정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맨 사건의 판결에서는 과실책임 요건을 결합의 입증으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주었다. 이를 미국에서는 엄격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맨 사건의 판결은 즉시, 다른 주로 전파되어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PL소송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계속 입법화하고 있는 PL법의 원류가 되었으며, 일본의 PL법도 이 사상을 채택하고 있다.

1962년 그린맨 사건 이후 제조물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묻는 엄격책임의 확립과 소비자보호 의식의 고양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물책임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배상액 또한 고액화 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제조물 책임소송 사건 수는 연방법원의 경우 1974년에 1,579건이었던 것이 1988년도에는 1만 7,140여건에 달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배상액 또한 해마다 급등하여 1988년에 평균 배상액이 1,535,944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의 두 번에 걸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인수 거부로 보험 없이는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를 “제조물 책임 위기”와 “보험위기”라고 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 위기의 원인은 1960년대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송의 증가와 미국의 독특한 소송제도 및 보험회사의 영업정책 등 여러복잡한 요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 소송이 급증하게 된 원인과 그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과다한 변호사 수

미국은 80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으며 매년 3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탄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 한 사람당 일본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어, 과다한 변호사는 변호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송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PL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측의 대리인만을 맡는 변호사가 있다. 이러한 원고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고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다는 계약을 하게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뢰인은 돈을 한푼도 내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국을 소송 범람상태로 끌고 간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소송비용이 없는 피해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면, 즉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로는 제품에 의한 사고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만을 찾아다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제품 결함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 건의 PL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고 변호사가 소송을 권유하는 이유는 재판에서 이겼을 때 받게되는 보수가 많기 때문이다.

● 저렴한 소송제기 비용

연방지방 재판소의 제1심 소송제기 비용은 소송금액과는 무관하게 30에서 100 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등 주요 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또한 변호사 비용 역시 성공보수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소송비용에는 여러 서류의 준비, 소송제기를 위한 여비, 증거수집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비록 원고사 폐소하더라도 피고측의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